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304호)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002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4 |
| 1. 병원선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병원선<br>추가 ..... | 4 |



## I. 개요

### 1.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304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태호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6. 17.
- (3) 회 부 일 : 2026. 7. 23.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음.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3조의2 신설 등).

## 2.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002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7. 16.
- (3) 회 부 일 : 2026. 7. 23.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0001호) 및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00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II. 주요 내용별 검토

### 1. 병원선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병원선 추가

#### 가. 개정안의 내용

- 양 개정안은 병원선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병원선이 아닌 자는 병원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병원선을 「의료법」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간주<sup>1)</sup>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제2조제1항제1호, 제29조 및 제31조).

| 현행                                                                                                    | 김태호의원안                                                                                | 강대식의원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br>-----.                                                      | 제2조(정의) -----<br>-----<br>-----.                                                      |
|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u>보건지소</u>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 | 1. -----<br>-----<br>-----<br>-----<br>-----<br>-----<br>----- <u>보건지소, 병원선</u> ----- | 1. -----<br>-----<br>-----<br>-----<br>-----<br>-----<br>----- <u>보건지소, 병원선</u> ----- |

1)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또는 제5호에 따라 병원선에서의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임.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                                                                                                                           |
|----------------------------------------------------------------------------------------------------------------------------|--------------------------------------------------------------------------------------------------------------------------------------------|---------------------------------------------------------------------------------------------------------------------------|
| 다.                                                                                                                         | -----.                                                                                                                                     | -----.                                                                                                                    |
| 2. · 3. (생 략)                                                                                                              | 2. · 3. (현행과 같음)                                                                                                                           | 2. · 3.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13조의2(병원선의 운영)                                                                                                                            | 제13조의2(병원선의 운영)                                                                                                           |
|                                                                                                                            | <u>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지역을 순회하는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다.</u> | ① <u>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지역을 순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다.</u> |
|                                                                                                                            | 1. <u>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u>                                                                                                 | 1. <u>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u>                                                                                |
|                                                                                                                            | 2. <u>각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u>                                                                                                           | 2. <u>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 및 방역</u>                                                                                  |
|                                                                                                                            | 3. <u>보건교육</u>                                                                                                                             | 3. <u>지역주민에 대한 보건교육</u>                                                                                                   |
|                                                                                                                            | 4. <u>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 4. <u>그 밖에 도서지역의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u>                                                                   |
|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u>보건지소</u>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u>보건지소</u>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br>----- <u>보건지소, 병원선</u> -----<br>-----<br>----- <u>보건지소, 병원선</u> -----<br>-----<br>-----.                         |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br>----- <u>보건지소, 병원선</u> -----<br>-----<br>----- <u>보건지소, 병원선</u> -----<br>-----<br>-----.        |
|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12조에 따른 보                                                                                              |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                                                                                                                   |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                                                                                                  |

|                      |                     |                     |
|----------------------|---------------------|---------------------|
| 건의료원은 「의료법」          | -----               | -----               |
| 제3조 제2항 제3호가목에       | -----               | -----               |
|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 -----               | -----               |
| 제1호나목·다목에 따른         | -----               | -----               |
|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         | -----               | -----               |
| 로 보고, <u>보건소·보건지</u> | ----- <u>보건소·보건</u> | ----- <u>보건</u>     |
| <u>소</u>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 <u>지소·병원선</u> ----- | <u>지소·병원선</u> ----- |
| 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        | -----               | -----               |
|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         | -----               | -----               |
| 으로 본다.               | -----.              |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나. 검토의견

- 병원선은 병원이 없는 섬이나 해안 또는 해상에서 부상자나 해난(海難) 사고 발생 시 인명구호를 목적으로 의료시설과 의료에 종사할 인원을 배치한 선박을 말함.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부터 도서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원선을 건조하였고, 현재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및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용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에 따라 인천·충남·전남광주(2) 및 경남에서 총 5척의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음.

## < 2025년 병원선 운영 현황 >

(단위 : 개, 명, 회)

| 병원선         | 도서 수 | 주민 수   | 이용 횟수  | 인력 현황 |     |    |
|-------------|------|--------|--------|-------|-----|----|
|             |      |        |        | 의료진   | 선박직 | 기타 |
| 인천옹진군 건강옹진호 | 17   | 19,425 | 5,067  | 6     | 7   | 1  |
| 충남병원선 501호  | 32   | 3,221  | 9,612  | 9     | 8   | 3  |
| 전남병원선 511호  | 77   | 3,974  | 11,937 | 8     | 7   | 1  |
| 전남병원선 512호  | 90   | 5,067  | 13,438 | 7     | 6   | 1  |
| 경남병원선       | 41   | 2,379  | 11,492 | 6     | 7   | 1  |

자료 : 보건복지부

- 현재 병원선 운영에 대하여 법률<sup>2)</sup>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과 병원선을 운영하는 4개 지자체 각각의 「병원선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 훈령과 4개 지자체 조례에서는 병원선의 주요 업무로 공통적으로 환자진료, 감염병 예방 등을 규정하고 있음.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로 ‘병원선’을 명시하고 있을 뿐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또는 시설) 법 제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병원선 및 이동진료반

**<훈령 및 조례상의 병원선 주요 업무>**

| 훈령                                               | 조례_인천 옹진군                                    | 조례_경남                        | 조례_전남광주                      | 조례_충남                                         |
|--------------------------------------------------|----------------------------------------------|------------------------------|------------------------------|-----------------------------------------------|
| 환자진료                                             | 순회진료,<br>주민의 보건 및<br>건강증진                    | 진료 및<br>보건향상                 | 진료 및<br>보건향상                 | 진료 및<br>보건향상                                  |
| 각종 전염병에<br>대한 예방접종 및<br>방역활동                     | 예방 접종 및<br>방역                                | 각종 감염병의<br>예방                | 각종 감염병 질환<br>예방              | 각종 전염병의<br>예방                                 |
| 보건교육                                             | -                                            | 보건에 대한<br>교육·홍보              | 보건에 대한<br>계몽                 | 보건 및 주민<br>건강증진에 대한<br>교육·홍보                  |
| -                                                | -                                            | -                            | 가족보건                         | 모자보건                                          |
| -                                                | 섬지역에서 발생한<br>응급환자의 응급<br>처치 및 거점병원<br>으로의 이송 | -                            | -                            | -                                             |
| -                                                | 응급정보의 전달<br>및 이송 시의 치료                       | -                            | -                            | -                                             |
| 기타 보건의료에<br>관한 사항중 보건<br>복지부장관이 필요<br>하다고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병원선<br>운영 목적 달성에<br>필요한 사항              | 그 밖에 병원선<br>설치 목적에 관<br>한 업무 | 그 밖에 병원선<br>설치 목적에 관<br>한 업무 | 기타 보건의료에<br>관한 사항 중 도<br>지사가 필요하<br>다고 정하는 사항 |

□ 양 개정안은 병원선의 운영 근거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병원선을 보건소 등과 동일하게 ‘지역보건의료기관<sup>3)</sup>’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병원선 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없는 도서 주민들을 위한 유일한 정기적 의료서비스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병원선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취약지 도서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 병원선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① 관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

3) 「지역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목적과 ②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의 의료인과 의료기사가 배치되어 의료기기를 사용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함.

- 또한, 병원선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될 경우 「지역보건법」 제24조<sup>4)</sup>에 따라 병원선 운영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병원선 운영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먼저, 병원선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되는 경우 현행법 제16조 및 제17조<sup>5)</sup>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인력, 시설·장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기존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경우 시·

- 
- 4) 「지역보건법」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
- 5) 「지역보건법」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 및 임용자격 기준과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기간·평가 및 그 결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지역주민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군·구가 소관하는 등 관할 범위가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이나, 병원선의 경우 관할 범위를 광역 지방자치단체<sup>6)</sup>로 하여 이동 진료 한다는 점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는 데 체계상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동 개정안들과 유사한 취지에서 제21대국회 당시 병원선의 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968호,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경상남도는 개정안에 동의하되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고려한 선제 설계 표준안과 건조 예산 지원, 운영비 지원 및 인력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충청남도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도서지역 주민만의 보건의료서비스 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강대식의원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1호) 및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논의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1호)에 대해 무료진료 원칙과 건강보험 본인부담 간

---

6)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병원선의 경우 본래 그 소관은 인천광역시이나, 인천광역시에서 용진군에 병원선 운영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임.

관계,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 간 역할 분담, 요양기관 지정·관리  
기준 등 구체적 운영방안을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 보건복지부

-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기에는 타 입법례에서도 선박을 기관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병원선의 기능은 제한적인 점,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지만 병원선은 '시·도' 단위로 운영되는 점 등 우려 점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병원선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원 사업 등을 시행 중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포함하여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대한의사협회

- 의료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는 공감하는 입장임. 그러나 일부 조항의 포괄적 위임의 불명확성이나 현장 근무인력의 대책 마련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조문별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함.
- 먼저, 병원선의 업무 수행 범위와 관련하여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나아가 병원선 고유의 목적에서 벗어난 보건복지부의 단발적·편의적 의료정책 시범사업을 위한 도구로 오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함.
- 또한, 병원선을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간주하도록 한 조항의 경우, 이처럼 병원선이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같은 형태로

간주된다면 인력기준, 시설기준, 평가 및 관리체계 등 다양한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높은 병원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병원선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현재 병원선은 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인력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공보의 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은 병원선의 운영 법적근거 외에도 근무할 의료인력 확보방안과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이나 병원선의 유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마련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임.

|              |
|--------------|
| 문 의 처        |
| 02)6788-5503 |